

EC의 정보통신분야 기술표준화

대원칙

지금까지 EC의 기술 표준화 작업은 각 품목에 대한 표준화에 대한 논의가 너무 지연되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어 EC는 이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을 취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인간의 건강, 안전 등에 관련된 필수 불가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EC의 통합규정 (Community Harmonization Legislation) 의 대상이 되나 이러한 입법 (legislation) 은 일반적인 선이나 또는 인명보호를 위한 표준규격 제정 등의 꼭 필요한 규정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세부규정은 유럽 표준기구 (European Standardization Bodies) 가 제정하게 된다.
2. 상기한 꼭 필요한 부분 이외의 기술규격과 관련해서는 국가간 상호인증 (national mutual recognition) 원칙에 귀속이 되게 되며 유럽 사법부의 판례*에 의해 자동적으로 시행되게 된다.

*1979년 Cassis de Dijon case 참조. 이 판례에서 유럽 사법부는 재화의 자유유통이라는 기본 권리를 확인하였으며 원칙적으로 어느 한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제조·판매되는 제품은 기타국에서도 판매될 수 있어야 한다는 판정을 내렸음. 이러한 원칙을 유보하는 경우는 EC 법규가 정

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 한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 대원칙에는 다음의 2가지 유보조건이 있다.

- 1) 통신분야를 포함, 호환성을 필요로 하는 Hightech 분야에서는 안전문제 이외의 보다 광범위한 분야에 EC의 강제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역시 세부규정은 표준화 기구가 제정하는 방식을 취한다.
- 2) 상호인증에 의해 시행되는 분야에서도 각국 규정을 합리화 하기 위해 비강제성 표준화가 시행될 수 있으나 이 표준규격을 따르지 않고 자국 규격만을 따른 제품도 (비강제 표준화이므로) 판매가 가능하게 된다.

주의해야 할 것은 표준화가 시행되는 분야에서 EC가 관여를 하지 않는 것은 표준화 기구에 위임을 하였다는 것이며 표준화 작업은 (특히 통신, 정보산업)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서 본 New Approach는 관리의 효율성을 기했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New Approach를 채택함으로써 기술적인 작업과 입법활동은 분리가 되어 기술적인 작업은 표준화 기구가 맡게 되었으며 입법활동은 집행위가 맡게 되는 분업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정보통신 분야의 표준화 Mechanism

1. 표준화 Mechanism

표준화 Mechanism은 다음의 3가지를 들 수 있다.

- ① EEC 법규
- ② 표준화 기구
- ③ 프로젝트를 제안하거나 지원금을 제공하는 등의 비공식 활동

1) EEC 법규 현황

◦ Directive 83/189/EEC
 새로운 기술장벽이 생겨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술 Spec와 관련된 모든 회원국의 입법초안 또는 규격초안을 집행위에 사전 제출해야 하며 필요시 집행위는 이의 시행을 잠정 보류시킬 수 있다.

◦ Directive 86/361/EEC
 Network에 사용되는 기기에 대하여 기술규정이나 승인절차의 상이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장벽은 철폐된다.

◦ Directive 87/95/EEC
 Network 호환성의 결여로 인한 정보전달 장벽은 철폐된다. Public Network은 호환성을 갖추어야 한다.

- Dicision 87/95/EEC
 - 국제 규격의 부정확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Gap을 메우기 위한 European Standards 제정작업 규정.
 - 공공구매(Public Procurement) 시 Standard 사용시 필요성 규정.
 - 각국 standard 규정 참고 규정.

2) 표준화 기구

집행위는 Directive 83/189/EEC에 의거 표준화 기구에 작업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일정 비율의 경비를 부담하게 된다.

3) 비공식 활동

상기한 Formal한 작업 이외에도 집행위는 자금 지원 등의 방법으로 표준화를 유도한다. 이것은 Standard 제정에 필요한 연구를 지원하는 하향성 지원과 연구중 지원하는 측면 지원, 합의된 표준규격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취해지는 상향지원이 있으며 상향지원의 가장 대

표적인 예가 Conformance Testing Services(CTS 1&2)로서 20million ECU가 지원되었다.

2. 표준화 기구

표준화와 관련, 집행위는 관리 및 간사역을 맡게 되며 기타 표준화 관련기관은 다음과 같다.

- 표준화 제정, 건의기구
 - CEN (European Committee for Standardization)
 - CENELEC (European Committee for Electrotechnical Standardization)
 - CEPT (European Conference of Postal and Telecommunications Administration)
 - ETSI (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는 CEPT의 기능중 표준규격 준비기능을 위임받음.
 - * CEN/CENELEC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EWOS (European Workshop on Open Systems)는 Workshop Function을 제공.

- 기타 비공식 조직
 - SPAG (Standards Promotion and Application Group)
 - ECMA (European Computer Manufacturer's Association)
 - ECTEL (European Telecommunications and Professional Electronics Industry)
 - CECUA (Confederation of European Computer User Association) 外.
- 집행위 지원 위원회
 - SOGITS (Senior Officials Group for Information Technology Standardization)
 - SOGT (Senior Officials Group Telecommunications)

1) 공식기구(국제기구) - IT 관련

-JTCI : 1987년 IT 표준화를 위해 ISO와 IEC가 세운 Joint Technical Committee로서 본 기구는 기술 그 자체만 다루게 되며 응용 분야는 다루지 않는다.

응용분야는 ISO 등의 기구들이 계속 다루게 될 것이다. 설립 목적은 IT 표준화 관련, 좀더 결집력 있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며 또한 하는 표준화 제정을 서두르는 것으로서 각국 표준화 기구들도 구성되어 있다. 현재 약 20여개의 Subcommittee와 실무 Group들에 의해 업무가 진행되고 있다.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Union)의 CCITT(International Telegraph and Telephone Consultative Committee)는 공공 Telecom Service 사이의 Communication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에 대한 건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각국 정부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나 실제로는 각국 Telecommunication 당국에 위임되어 이들이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

2) 공식기구

CEN, CENELEC, CEPT(ETSI)가 있으며 이들은 Project의 성격에 따라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표준화 작업을 하고 있다. 프로그램 관리는 ITSTC(IT Steering Committee)가 하고 있으며 ETSI는 1988년초 설립되었다.

3) 공식기구(국가)

집행위는 표준화 기구에 의해 채택된 안을 각국 기관과 협의함으로써 공정성을 기한다.

4) 비공식 조직

이들은 필요에 따라 자신들에 맞는 표준규격을 제정하고 있으며 법적 근거는 없으나 향후 국제규격으로 채택되는 사례가 많다.

이들중 가장 발전된 형태가 CEN/CENEC내의 EWOS(European Workshop for Open System)로서 제품의 공급자와 소비자들을 함께 모아 이해를 결집하며 CEN/CENELEC에 의견을 반영시켜 궁극적으로 ISO가 OSI Functional Standard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한

다.

(Interest Groups→European level→International level)

3. 유럽 표준 규격

가. 표준규격

1) 기본적인 European Standard는 EN이며 이것은 CEN이나 CENELEC에 의해 발행되어 EEC 및 EFTA 국가에 적용된다. 의무적으로 각 회원국은 EN을 National Standard로서 채택해야 되며 만일 이 Standard가 적용되는 분야에 법규(legislation)과 같은 기타의 mechanism이 개입하지 않을 경우에 이 EN은 Voluntary한 성격을 가지게 되며 개별기업은 이 EN을 따를 수도 있고 무시할 수도 있다.

즉, 회원국이 National Standard로서 채택하여야 한다는 점에서는 의무적이나 Legislation이 규정하지 않을 경우 그 적용면에서는 자율적인 것이 됨.

이 EN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CEN이나 CENELEC은 HD나 ENV를 발행하게 된다.

○HD(Harmonization Document)

각국의 상이한 Standard를 잠정적으로 인정. 이것은 National Standard화 될 필요는 없으나 이에 위배되는 각국 Standard는 없어야 한다.

○ENV(European Pre-standard)

EN을 적용할 시기가 안되었을때 발행되는 과도기적 일반규격으로 ENV는 모든 회원국에서 인정되어야만 하나 실행될 필요는 없으며 이에 위배되는 Standard도 남아 있을 수 있다. 이것은 3년안에 EN으로 되거나 ENV로 재발행되거나 철회되어야 한다.

2) ETSI는 Recommendation를 발행하며 일부는 CEN이나 CENELEC에 의해 EN/ENV/HD로 되어 상기한 효력을 갖게 된다.

3) Functional Standards

Functional Standard는 현재 170개 이상인 되는 OSI(Open System Interconnection) 및

OSI 관련 Standard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기능 X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Standard A, B, C...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형식의 Standard 위의 Standard이다.

이것은 유럽 표준화 기구들의 공동작업에 의해 준비되며 ENV로 일단 발행되게 된다.

나. Mechanism

1) IT

집행위는 EC 및 EFTA 회원국 표준화 기구로 구성되어 있는 CEN 및 CENELEC과 일괄계약을 맺어 우선 분야를 선정하고 CEN이나 CENELEC에 제정을 위임, 일정비율의 작업경비를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 표준화 기구는 과제를 승낙, 또는 거부할 권한을 가지며 작업완료후 일정 Spec이 Standard로 채택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투표할 권한을 가지게 된다.

현재까지 160여개 사업이 위임되었으며 EC는 현재 1천만 ECU 가량을 지원하였고 300여개의 Standard가 제정, 또는 기안되고 있다.

2) 통신

과거에는 CCITT가 만든 국제 Recommendation를 각국 통신당국이 취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1988년 ETSI 발족과 더불어 변경되게 되었다. CEPT는 ETSI에 Recommendation의 작성과 Common Technical Spec 구성기능을 위임하고 우편 통신분야의 기술과 상업정책을 Coordinate하는 업무에만 관여하게 되었다. 제정 지원을 위해 EC는 CEN/CENELEC과 맺은 일괄계약과 같은 성격의 계약을 ETSI와 맺었으며 ETSI의 가장 중요한 Task로는 ISDN, Mobile Communications(GSM, radio messaging), Terminal Equipment 표준화 작업을 들 수 있다.

현재 170개 ETS가 ETSI에 의해 준비되고 있으며 이중 80%가 1990년 5월까지 심사단계(public enquiry)에 있다.

1988년 봄과 1989년말까지 EC는 ETSI에 3.7M ECU를 지원하였으며 EC와 EFTA의 지

원은 향후 이정도 선에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3) 향후전망

의무 표준화 과정의 재정립은 터미날 장비에 대한 형식승인의 상호인증에 대한 새로운 이사회 규정에 기초하게 될 것이며 이 규정은 Terminal 장비의 마케팅과 Public Network의 연결까지 Cover하게 될 것이다.

이동안 ETSI는 현재와 같이 ETS를 발행하게 될 것이며 CTR(Common Technical Regulations)로 알려진 세부 표준규격은 집행위가 ACTE(Approval Committee for Telecommunications Equipment)로 승인을 상정하기 이전에 TRAC(Telecommunication Recommendations Applications Committee)에 의해 심사될 것이다. ACTE에 의해 도입된 CTR은 Terminal의 형식승인에 관한 강제 규정이 될 것이며 NET를 대체하게 될 것이다.

4. The CTS Programme
(Conformance Testing Services Programme)

CTS 1계획은 OSI 및 통신분야 Testing 기반을 마련하고 현존 Testing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서 유럽 공동체 정책과 합체될 수 있도록 만드는데 있다.

CTS 1이 1987년말경 시작되었으며 1989년 중반까지는 모든 CTS 1이 시작되게 되며 CTS 1의 진행과 더불어 CTS 2도 진행된다.

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ESTI)

ESTI는 유럽내 통신 표준화 작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설립된 독립기구이며 1987년 집행위의 Green paper에서 설립이 제안 1988년 봄 설립된 기구로서 CEPT로부터 독립된 기구이다.

1. 영 역

1. CEN, CENELEC과의 협조하에 Information Technology와 Telecommunications의 Grey Zone

2. EBU(European Broadcasting Union)과의 협조하에 Broadcasting과 Telecommunication의 Grey Zone.

2 OUTPUT

ETSI의 Project team에 의해 만들어지고 ETSI의 Technical Assembly의 승인을 거친 표준규격은 ETS(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로 불리며 자발적(Voluntary Standard) 표준규격의 성격을 띠게 된다.

시험기간이나 임시조치에 불과한 표준규격은 I-ETS(Interim 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라 불려진다.

ETS나 I-ETS의 채택은 각국 표준화 기구의 검토후 가중 투표에 의해 결정된다.

또한 ETSI는 향후 표준화를 위하여 Pre-standardization Study를 행할 수 있다.

ETSI는 1993년까지 ISDN의 상용화를 위해서 200여개의 ETS를 제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또한 Mobile Service의 표준화 필요성에 대한 전략연구를 행하였으며 Pan-European Digital Cellular Network을 구성하기 위해 100여개의 ETS를 준비중이다.

3. Membership

다음 기구들은 Member가 될 자격이 있다.

National Administrations

Public Network Operators

Manufacturers

Users and Private Service Providers

Research Boodies

Consulting companies

회원들은 개별적으로 또는 국가나 유럽 수준의 group을 저서 참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협회들은 중소기업들의 이익만을 대변할 수 있으며 각국 표준화 기구도 회원이 될 수 있다.

제조업체들은 자회사가, 또는 모회사가, 또는 같이 참여할 수 있다. 현재 회원수는 215개에 달하며 투표권은 없으나 발언권만을 갖는 Observer 자격도 가능하다. CEC와 EFTA 사무국도 ETSI의 Counsellor로 활동하고 있다.

4. 지 역

ETSI의 회원들은 아래의 CEPT 회원국중 1개국 이상에 Base를 두고 있어야 한다.

Austria, Belgium, Cyprus, Denmark, Finland, France, FRG, Greece, Iceland, Ireland, Italy, Luxembourg, Malta, Netherlands, Norway, Portugal, Spain, Sweden, Switzerland, Turkey, U.K

5. 조 직

1) General Assembly

행정기구, ETSI의 정책을 결정하며 Director 및 Deputy Director 선정, 예산채택, 회계승인 기능이 있으며 모든 회원이 참석할 수 있다. 재정문제 관련 각 회원 직접 투표방식을 택하며 기타 결정은 국가 가중투표로 결정된다.

2) Director, Deputy Director

자원배분, 업무 Schedule, 우선순위, 대외 기구와의 관계 등을 General Assembly의 Guideline과 Technical Assembly의 결정에 따라 집행한다.

3) Secretariat

Director와 Deputy Director는 일과와 관련 소규모 사무국을 운용할 수 있다.

4) Technical Assembly, Technical Committees, Project Teams

표준규격 제정, 승인의 최고기구인 Technical Assembly이며 업무방향을 설정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실무는 특정 Issue들

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Technical Committee와 Project Team들에 의해 진행. Technical Committee는 정기적으로 만나며 특정분야의 상임 전문가들로 구성되고 Project Team은 전문가(full-time)들로 구성되며 표준규격 연구 및 초안작성을 하여 Technical Co

mmittee에 상정하는 업무를 행한다.

General Assembly와 Technical Assembly에 의해 구성된다. SCR(Strategic Review Committee)가 한 예로서 특정문제에 대해 Technical Assembly에 시장 동향 및 기술 개발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관적인 자문을 한다.

제 5 회 한국 컴퓨터, 소프트웨어 전시회 (SEK '91) 안내

1. 전시회 개최 개요

1) 명 칭 : 제 5 회 한국 컴퓨터, 소프트웨어 전시회 (SEK '91)

2) 목 적

컴퓨터 소프트웨어 산업의 활성화, 소프트웨어 개발 촉진과 판로 진작, 외국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소개와 국내의 개발경쟁력 제고, 수출업체 상호간의 정보교환에 의한 개발기술 향상.

3) 기 간 : 1991. 6. 27(목)~7. 1(월)
(5일간)

4) 장 소 : 한국종합전시장 태평양관 1, 2, 3실
(7,776s/m)

5) 주 최 : 체 신 부

6) 주 관 : 전자신문사
정보처리전문가협회

7) 후 원 : 한국전기통신공사, 대한 무역진흥공사, 한국전자공업진흥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시스템공학센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정보산업연합회, 한국방송공사, 한국데이터통신(주)

8) 참가예상국 및 업체수

참가예상국 : 한국, 미국, 일본, 서독, 영국, 대만 등

출품예상업체수 : 약 200개사

9) 참가대상

공장자동화용 프로그램, 사무자동화용 프로그램, 가정자동화용 프로그램, 컴퓨터 그래픽, 컴퓨터 H/W 및 주변기기, 기술도서 및 자료, 기타 관련제품

10) 참관 예상인원 : 약 15만명

2. 추진일정

| 추진내역 | 일정 |
|-------|-------------------------|
| 신청접수 | 1991. 1. 4~1991. 3. 31 |
| 장치공사 | 1991. 6. 23~1991. 6. 25 |
| 전시품반입 | 1991. 6. 26 |
| 개막식 | 1991. 6. 27(10:00) |
| 전시품반출 | 1991. 7. 2 |
| 철거완료 | 1991. 7. 3(18:00까지) |

전시품 기간중 관람 시간은 매일 10:00~17:00
출품업체 상주근무자는 09:00~18:00